

서울특별시의회
제295회 임시회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0. 6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우 형 찬

□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양천3지역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두고 있으나, 해당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합니다.

□ 동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

□ 서울시는 이미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, 갈등경보제,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등과 같은 공공갈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개정안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,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효과적으로

관리하며 나아가 서울시정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